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3. . . (제 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옥외광고 시장 환경 및 사회 변화에 따라, 산업계에서 건의되는 각종 옥외광고 규제를 완화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 강화 및 기타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민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차량 이용 광고물의 표시 부위 확대(제19조 개정)

- 1) 종전 차량 이용 광고는 창문을 제외한 차체 일부에만 가능했으나,
- 2) 차량(사업용 차량, 자기 소유 차량) 이용 광고 표시부위를 ‘창문을 제외한 차체 각 면’으로 확대

나. 경전철·모노레일·철도 관련 옥외광고 규제 완화(제2조, 제4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개정)

- 1) 철도 차량의 표시면적을 ‘창문을 제외한 옆면의 1/2’에서 ‘창문을 제외한 전체 면적’으로 확대
- 2) ‘도시철도 역사’를 옥외광고가 가능한 교통시설로 명시
- 3) 경전철 교각 내 상업광고 기한을 '23년에서 '28년으로 연장

다. 대학 내 옥외광고 규제 완화(제24조 개정)

- 1) 학교 내에서는 자사광고 이외의 옥외광고는 불가했으나, 대학 내에서는 상업 옥외광고를 허용

라. 공공목적 옥외광고물의 주기적 안전점검 의무화(제29조 개정)

- 1) 국가 등이 설치하는 광고물도 일반 광고물에 준하여 안전점검 의무화

마. 지자체 자유표시구역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제28조의5 신설)

- 1) 지자체의 자유표시구역 사업 추진력 확보를 위해 추진실적 제출 및 행안부-시도-시군구 공동 협의체 구성

바. 옥외광고 수익금 운영 및 관리 감독 강화(제31조, [별표2] 개정)

- 1) 옥외광고 수익금 배분 및 집행실적 등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 2) 수익금 기 지원 행사 삭제 및 신규 국제 행사 추가
- 3) 국제행사 미배분금 등을 차년도 수익금에 계상하여 투명성 강화

사. 기금 조성용 옥외광고 사업 관련 미비사항 보완(제30조, [별표3] 개정)

- 1) 광고물 표시기간을 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기간으로 변경
- 2) 기금 조성용 광고의 길이 기준을 면적 기준으로 변경
- 3) 기금 조성용 광고 설치 특례 도로 추가
- 4) 준용규정 오류 정정

아. 제도적 미비사항 보완([별표7], [별지]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 개정)

- 1) 영업정지 위반 차수의 기간 계산 시점을 '위반일'에서 '적발일'로 개정하여 계산 시점 명확화

2)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서식 개선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다목 중 “지하철역”을 “도시철도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8호 단서 중 “지하철역”을 “도시철도역”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하철역”을 “도시철도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차체의 옆면, 뒷면”을 “차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차량 1량의 각 옆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범위에서”를 “광고물은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량의 각 옆면에 표시하되, 면적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본체 옆면”을 “차체”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자목 중 “학교”를 “학교(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6장에 제2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5(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기타 사항)

① 법 제4조의4제9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실적(이하 “추진실적”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의 진행 사항
2.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재원 확보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시 발생한 문제점및 개선방안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의 추진이 부진하거나 기본계획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 제4조의4제9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지역주민, 옥외광고사업자, 관련 전문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자유표시구역 운영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원은 8명 이상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등, 자유표시구역 내 사업자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고, 협의회의 장은 구성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협의한다.

1. 자유표시구역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⑥ 협의회의 조직·운영 및 구성원의 해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9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국가등은 공공목적 광고물 중 제36조 각 호의 광고물에 대해서는 관할 시장등과 협의 후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기준, 방법 등은 제37조와 같다.

제30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정책위원회 의 심의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기간으로 한다.

제3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제3항에 따른 옥외광고 수익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서와 집행계획서, 결산보고서 등을 국가재정법 제61조에 따른 국회 제출 시기에 맞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주요 국제행사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산정 방법, 배분비율 및 배분방법
등(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제4항 관련)

1. 주요 국제행사

가. 2025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

나.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다.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2.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산정 방법

가. 광고물의 설치비용, 유지관리비, 영업비 등 광고물의 설치·운영에 직접 드는 경비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금액이 정산되거나 반납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연도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에 반영한다.

1) 가목에 따라 산정된 경비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

2) 제3호가목1) 및 가목2)에 따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배분하고 남은 금액

3) 제3호나목2)에 따라 한국옥외광고센터가 법 제11조의4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금액

4) 제4호다목·라목에 따라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반납된 금액

3.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비율 및 배분방법

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분한다.

1) 기금조성용 광고물등을 설치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 대한 지원

2) 광고물등의 정비사업을 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 대한 지원

3)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대한 법 제11조의4제4항 각 호의 사업의 운영·관리에 드는 비용의 지원

나.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배분한다.

1)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제1호의 주요 국제행사의 조직위원회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배분

2) 1)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배분하기로 정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법 제11조의4제4항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배분

다. 주요 국제행사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조정하여 배분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국제행사가 추가되는 경우: 나목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 배분

2)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국제행사가 추가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해당 국제행사에 배분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맞추어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분 비율에서 각각 균등하게 조정하여 배분

라. 나목1) 및 다목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제1호의 주요 국제행사에 지원하는 기간은 해당 국제행사가 끝나는 달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까지로 한다.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나목1) 및 다목에 따라 조정하여 배분한 수익금을 라목에 따른 기간 동안 제1호의 주요 국제행사에 지원하려는 경우 연도별 배분액을 수익금을 지원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주요 국제행사에 추가되어 해당 연도에 수익금을 지원하려는 경우나 이미 통보한 금액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4.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사용·운용하고 남은 금액의 처리방법

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는 제3호가목2)에 따라 배분받아 광고물등의 정비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제3호가목3)에 따라 배분받아 해당 연도의 법 제11조의4 제4항 각 호의 사업의 운영·관리에 드는 비용에 지원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제1호의 주요 국제행사의 조직위원회는 제3호나목1)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라 배분받아 주요 국제행사의 준비 및 운영 등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정산이 끝난 날의 다음 분기까지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반납해야 한다.

라. 제3호가목3) 및 나목2)에 따라 한국옥외광고센터를 통해 사업의 운영·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은 기관은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해당 사업이 종료 또는 취소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까지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반납해야 한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기금조성 옥외광고물의 종류 등(제30조제2항제2호 관련)

종류	규격, 형태 및 디자인	설치장소 및 방법
1. 지주 이용 간판	가. 광고면의 면적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평면형: 한 면의 면적은 144㎡ 이내여야 하고, 각 면의 합계 면적은 288㎡ 이내로 해야 한다. 2) 입체형, 복합형: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은 200㎡ 이내 나.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게시시설의 높이를 포함하여 도로면 수평높이로부터 25m 이하여야 한다. 다만, 게시시설의 위치가 도로면 수평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높이만큼 더 높게 할 수 있다. 다. 광고물의 형태는 다음 각 목과 같다. 1) 평면형: 광고판의 한 면 이상을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문자, 그림, 이미지 등 평면적 형태로 표시하는 광고물 2) 입체형: 원형, 사각기둥 등 입체형 도형이나 그 조합형태 또는 실물모형 등을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입체적·조형적 형태로 표시하는 광고물 3) 복합형: 평면형과 입체형을	가. 도로·제방·하천 등 시설물의 기능이 유지되고, 자연수목이나 농작물의 생육에 지장이 없으며, 자동차 등의 운전 시계(視界)에 장애가 되지 않는 곳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의 접도구역을 침범하지 않는 곳에 설치해야 하며, 접도구역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의 갓길을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 2)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로부터 30m 밖의 지역에 설치해야 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나. 광고물등 간 간격은 주행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200m 이상이 되게 설치해야 한다. 다.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홍수시 유수(流水)의 소통 및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광고물의 기초 바닥

	조합한 형태로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라. 게시시설은 구조확인 및 안전검사를 거쳐 하나 이상의 철골 또는 파이프 등 지주로 광고물을 지탱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고, 철재 게시시설은 주변 환경 및 자연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철골모양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게 해야 하며, 안전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입체적·조형적 형태의 게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마. 광고물의 디자인은 도시미관 및 자연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되, 광고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옥외광고센터는 광고물 디자인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 등에게 자문해야 한다.	은 「하천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계획홍수위보다 낮아서 안 된다. 2) 제방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가 작성한 안전검토서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방이 도로 등 다른 기능을 겸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2. 홍보탑	가. <u>한 면의 면적은 50㎡ 이내여야 하고, 각 면의 합계면적은 100㎡ 이내로 하되</u>, 입체형·복합형 광고면적의 산정은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나. 고속국도 휴게소 부지 안에서만 광고물 면적이 12㎡ 이내, 광고물등의 윗부분까지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8m 이내인 전광	가. 공항·철도역사·버스 및 항만터미널, 고속국도 휴게소(휴게소 진입로 및 출입로는 제외한다) 부지 안에만 설치할 수 있다. 나.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자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다. 적색·녹색·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 등의 색상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색상은 사용할 수

	류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다.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호 지주 이용 간판의 <u>다목부터 다목까지의</u> 규정을 준용한다.	없다. 라. 광고물등 간의 간격은 두지 않되, 이미 설치된 광고물과의 경합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3. 옥상간판	표시규격은 제15조제6호를 준용한다.	가. 표시를 할 수 있는 건물 층수는 제15조제3호를 준용한다. 나. 광고물등 간 간격은 주행방향기준 200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기의 건물에 그 건물명이나 자기의 성명·주소·전화번호·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광고물과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이 목에 따른 광고물 간의 간격을 적용할 때 광고물로 보지 않는다. 다. 옥상간판은 고속국도변 지주 이용 간판의 설치가 어려운 지역의 50미터 이내에 인접한 건물에만 설치해야 한다.

비고

- 전기를 이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해야 하며 빛이 점멸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정지화면 형태로 표출되어 한 화면의 지속시간이 9초 이상이고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시간이 1초 이내인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
-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한 설치특례

가. 나들목과 분기점, 올림픽대로, 자유로, 강변북로, 인천국제공항고속국도, 경

부고속국도(서울~안성 구간)에 대해서는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성과 주변경관과의 조화가 충분히 확보되는 범위에서 도로 및 광고물간의 거리·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평면형 광고물등의 높이는 도로와의 간격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산지지역에 설치하는 광고물의 총 광고면적 또는 크기는 지주 이용 간판 형태별 면적 또는 크기기준의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 산지지역에 설치된 광고물등의 높이는 설치지점부터 산정한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제51조 관련)

위 반 행 위	근 거 법 조 문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법 제14조제1호	등록취소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 무허가 옥외광고물인 경우 (변경을 포함한다)	법 제14조제2호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등록취소
나. 무신고 옥외광고물인 경우 (변경을 포함한다)		영업정지 15일 미만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등록취소
다. 표시방법을 위반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조치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등록취소
라. 금지하는 지역·장소·물건에 옥외광고물을 표시·설치한 경우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등록취소
마. 금지 광고물등인 경우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등록취소
바. 안전점검에 불합격한 옥외광고물인 경우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등록취소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등록취소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등록취소

2의2.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가.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나. 가목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해당 영업정지 기간 종료일까지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다. 나목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해당 영업정지 기간 종료일까지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제2호의2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등록취소			
3. 법에 위반되는 옥외광고물 등을 설치하여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 4.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14조제3호 영업정지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 등록취소	법 제14조제4호 영업정지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 등록취소		

비고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하되, 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1을 가중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변경)허가 10일, (변경)신고 5일, 심의대상 (변경)허가·신고 20일	
광고주 (타사광고는 옥외광고 대행사업자)	성 명(법인명)		업소명		생년월일(법인번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옥외광고	상 호		대표자		옥외광고사업등록번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		가격(예정가격)			
표시기간			광고내용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게시시설 시공업소명	대표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광고물등 관리자	주 소				전화번호

안전점검 신청 여부 (처리기간 7일)	안전점검 신청 [], 미신청 []
-------------------------	----------------------

그 밖의 사항

※ 인공구조물 설치허가 여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토지나 건물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여부를 적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2항·제5항, 제10조, 제11조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신고)인 성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증(신고증명서)

광 고 주 (타사광고는 옥외광고 대행사업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번호)
	업소명	
	주 소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광고물등의 규격		광고내용
표시 위치 또는 장소		
표시기간		
광고물등 관리 자	성 명(법인명)	업소명
	주 소	
시공업소	대표자	업소명
	주 소	
허가조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절지(80g/㎡)]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옥외광고물 표시 대상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교통시설 가.·나. (생략) 다. <u>지하철역</u> 라. ~ 바. (생략) 2. (생략) ② (생략)	제2조(옥외광고물 표시 대상 등) ①----- ----- ----- ----- ----- ----- ----- ----- ----- 1.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u>도시철도역</u> 라. ~ 바.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를 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략) 8. 제3조제12호에 따른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하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 ----- ----- ----- ----- ----- ----- 1. ~ 7. (현행과 같음) 8. ----- ----- -----

다만, <u>지하도·지하철역·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u>	----- <u>도시철도역</u> -----
9. ~ 13. (생략)	9. ~ 1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제17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
1. 다음 각 목의 공공시설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라목의 공공시설물에는 <u>2023년 12월 31일</u> 까지만 표시할 수 있다.	1. ----- ----- <u>2028년 12월 31일</u> -----
가. ~ 마. (생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제18조(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은 이 영에서 정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u>지하도·지하철역·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u>	제18조(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 ----- <u>도시철도역</u>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음식판매자동차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
1. 창문 부분을 제외한 <u>차체의 옆면, 뒷면 또는 버스돌출번호판(버스의 출입문에 부착하여 출입문 개방 시 돌출되게 설치한 번호판을 말한다)</u> 에 표시하여야 한다.	1. ----- <u>차체</u>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차량의 외부에 표시하는 <u>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차량 1량의 각 옆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범위에서</u> 해당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한다.	③ ----- <u>광고물은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량의 각 옆면에 표시하되, 면적은</u>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및 덤프트럭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한다.	⑤ -----

1. 외부의 창문 부분을 제외한
본체 옆면에 표시해야 한다.

2. 3. (생략)

⑥·⑦ (생략)

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
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 ①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
장소 또는 물건을 말한다.

1.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및 장소

가. ~ 아. (생략)

자. 관공서·학교·도서관·
박물관, 「의료법」에 따
른 병원급 의료기관, 공회
당·사찰·교회 및 그 부
속시설

차. ~ 타. (생략)

2. (생략)

② (생략)

<신설>

1. -----
차체-----.

2. 3. (현행과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

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
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 ① -

-----.

1. -----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학교(다만, 「고
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는 제외한다)-----

차. ~ 타.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의5(광고물등 자유표시구
역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기타
사항) ① 법 제4조의4제9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
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된 추진실적(이하 “추진
실적”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의 진
행 사항

2.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에 필요한 예산 및재원 확보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시 발생한 문제점 및 개선방
안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하
고, 그 결과 기본계획에 따른 사
업의 추진이 부진하거나 기본계
획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사에
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 제4조의4제9항에 따라 시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지역주민, 옥외광고사업자, 관
련 전문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자유표시구역 운영협의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 방법) ① ~ ⑦ (생략) <신설>	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원은 8명 이상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등, 자유표시구역 내 사업자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고, 협의회의 장은 구성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협의한다. 1. 자유표시구역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⑥ 협의회의 조직·운영 및 구성원의 해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 방법)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국가등은 공공목적 광고물		제30조(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및 광고물등의 설치기준 등) ① (생략) ②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 등을 말한다. 1. 2. (생략) 3.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별표 1에 따른다. 4. 5. (생략) ③ ~ ⑤ (생략) 제31조(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 배분 등) ① ~ ④ (생략) <신설>	중 제36조 각 호의 광고물에 대해서는 관할 시장등과 협의 후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기준, 방법 등은 제37조와 같다. 제30조(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및 광고물등의 설치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2. (현행과 같음) 3.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기간으로 한다. 4. 5.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 배분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제3항에 따른 옥외광고 수익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서와 집행계획
--	--	--	--	---

서, 결산보고서 등을 국가재정
법 제61조에 따른 국회 제출 시
기에 맞춰 국회 소관 상임위원
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연 락 처	(044) 205 - 3544